

특집 ▶ 축산계열화법·축산업 협력법 집중 탐구

# 축산계열화법, 2월 23일 본격 시행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상생 목적 양계농가 계열화업체 양쪽 시너지 기대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 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축산계열화사업은 국내 축산업계가 경쟁력 강화 및 FTA에 따른 시장 개방,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사료가격 인상과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돼 왔다.

하지만 축산계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계약상 불공정 문제, 사육경비 및 원자재 품질 문제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의 상생협력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국정감사 당시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은 육계계열화사업 위탁사육 계약서의 불공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 당국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해관련단체, 관계부처 및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끝에 2011년 10월 20일 김학용 의원이 축산계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1. 축산계열화법 발의 한달여 만 국회 통과

2011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축산계열화법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



김 수 용 기자  
농축유통신문

고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가축 계열화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포함되는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사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축산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사육농가협의회와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2012년 10월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우선 시행령을 보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가 명확해졌다. 축산계열화법의 표준계약서 작성, 사육경비의 지급,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농가협의회 협의 요청,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위반 발생

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축산계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의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고 2000만원(법률에서는 3000만원 이하로 규정),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임원·종업원 등은 최고 600만원(법률에서 1000만원 이하로 규정)의 과태료가 정해졌다.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은 수급조절 절차 및 운용방법, 계약서 작성, 준수사항,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확해졌다.

수급조절은 축산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생산자 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요청서에 필요한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 이유, 기간, 지역, 대상자, 발동 기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과 절차, 운영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가축사육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며 축산

## 특집 ▶ 축산계열화법·축산업허가제 집중 탐구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축사시설, 방역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 사육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위 축산법 개정사항을 계약서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양측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혼돈을 방지하고 상호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에 따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분쟁조정의 핵심인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양측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 산업의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분쟁을 조정 또는 협의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정됐으며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는 전국단위 축산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 내용, 가축·사육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영계획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 시 계약사육농가협의회와 계열화사업자간의 협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사육농가협의회에서 분쟁 조정 실패시 시·도지사는 합의 권고가 가능하며 미 합의시 축산계열화협의회에 회부도 가능하다.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축산

계열화협의회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축산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 농식품부에 설치된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 사육경비,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 3.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제정·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월 18일 양계농가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이하 표준계약서)'을 제정해 보급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2010년 국감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해 (사)대한양계협회(양계 농가단체)의 표준약관 제정건의와 (사)한국계육협회(육계 사업자단체)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 의견수렴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준수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병아리 공급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사업자는 병아리 운송송장에 병아리의 품종, 병아리를 생산한 부화장, 해당종란을 생산한 종계장, 종계의 주 단위로 나타낸 주령

을 명시하도록 했다.

두 번째, 사육경비의 변경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사육경비는 매년 1회 이상 물가사승,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하에 결정하고 최종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는 농가에게 육계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협의 하에 현물로 공급할 수 있다.

세 번째, 불량병아리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병아리가 폐사한 경우, 농가가 병아리를 제공받은 후 7일 이내에만 사업자가 책임지고 7일이 경과한 이후의 폐사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없이 농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계약이 많지만 이는 불합리하다.

이에 7일 이후에 발생한 폐사가 불량병아리 제공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상하고 폐사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진단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이때 정밀진단기관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정하고 진단비용은 농가와 계열사가 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네 번째, 각종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다.

육계를 사업자에게 출하하는 경우 운송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육계를 운송수단에 신는 상차비용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되 상차과정에서 발생한 육계의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한 육계의 무게를 측정(계근)하는 경우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해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섯 번째, 사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생겼다.

농가가 구비해야 할 구체적인 사육시설 기준, 사육경비 지급지연시 지연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도록 했으며 폐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기준육성률, 기준 사료요구율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평가방식 및 사육경비 지급방식 등은 부칙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육경비 지급을 위한 사육성적 평가방식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구매 또는 위탁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계열화사업법의 시작은 축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계열업체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산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상호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것으로 예상되며 다가오는 FTA와 DDA로 대변되는 개방의 물결 속에서 국내 축산업 전체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밀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축산계열화법은 절대적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